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가단52869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박종일, 임아영

피고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베스트 담당변호사 김병철

변론 종결2023. 3. 29.

판결 선고2023. 4.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188,211,995원 및 그중 151,235,317원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2021.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65,600,481원 및 그중 51,747,240원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2021.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24. 접수 제380967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24. 접수 제9266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20. 8. 20.자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24. 접수 제38096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24. 접수 제9266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의 대출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9. 4. 1.자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2)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5.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0. 20. 기준 미변제된 대출금은 아래 표의 '잔여원금 및 이자 등' 기재와 같다.

1	2019. 3. 22.	550,000,000	3.69	6.69	51,747,240	13,853,241
2	2019. 4. 1.	290,000,000	4.34	7.34	151,235,317	36,976,678

3)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차611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의 이의에 따라 진행된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714호)에서, 위 법원은 2020. 1. 15. 'D은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004,984원 및 그중 254,607,907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7.3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D과 피고 C 사이의 양도계약 등

1)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E	주식회사 F	2016. 5. 3.	70,000,000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	G	G	2017. 12. 21.	90,000,000

2) D은 2020. 8. 20.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20. 8.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2019. 3. 22. 및 2019. 4. 1.자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여금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시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 ①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회복지법인 H(변경 전: 사회복지법인 I, 이하 'H'라 한다)에 대한 채권 1,371,301,060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② 피고 C은 D의 채권자로서 채권 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및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 C은 D의 채무초과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1) 채무초과상태 인정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 1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가액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액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채무 177,230,053원과 피고 C에 대한 채무 171,635,712원만 보아도 합계 348,865,765원(= 177,230,053원 + 171,635,712원)에 이르렀던 점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나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H가 2017. 5.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DOCUMENT: H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잔액확인서(이미지 생략)

② D 명의의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 예금계좌에 입금명 'H' 또는 'P'로부터 2019. 5. 16. 10,000,000원, 2019. 9. 11. 5,000,000원, 2020. 1. 22. 5,000,000원, 2020. 4. 8. 5,000,000원, 2020. 6. 16. 5,000,000원, 2020. 10. 27. 3,000,000원, 2020. 11. 2. 3,000,000원, 2020. 11. 24. 5,000,000원, 2021. 9. 3. 5,000,000원, 2021. 12. 7. 10,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③ H가 2021. 11. 25. 'H는 D(J), 주식회사 K에 증서 2013년 제375호, 증서 제2017년 제435호 잔액확인서 등을 서명 날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2021. 11. 25. 현재 잔액 일금 일십사억이천삼십일만일천사백이십 원정(1,420,311,420원)을 미지급한 상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H에 대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D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2017. 5. 17.자 확인서에 따르면 D 및 D 운영의 주식회사 K 등의 H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은 2011년 약 3억 4,600만 원, 2012년 및 2013년 약 6억 700만 원, 2014년 및 2015년 약 2억 8,200만 원, 2016년 약 1억 원, 2017년 약 3,5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2017. 5. 17. 기준 합계 약 14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D은 H로부터 처음 대여 시점(2011년)으로부터 약 6년간 계속하여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의 요구에 의해 2017. 5. 17.경 위 확인서만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O 설령 D 계좌로 입금된 합계 5,600만 원이 D 등의 채권 변제를 위해 H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D 등의 전체 채권액(약 14억 2,000만 원)의 약 4%에 지나지 않고, 최초로 발생한 2011년자 채권 약 3억 4,600만 원을 변제하기에도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다.

O D 등은 H에 대한 그 채권액이 약 14억 2,000만 원에 달함에도 위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확인서나 공정증서(2013년, 2017년 작성되었다는 공정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긴 하다)를 발급받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위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위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양도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권양도 때문에 초래된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와 수익자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2020. 8.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 근저당권과 함께 피고 C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인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24. 접수 제38096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24. 접수 제9266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23. 4. 25.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김민정

별지

1)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포한다.